

##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

### 제 1 조(목적)

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(이하 '본 기준'이라 한다)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 58 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두물머리투자자문(이하 '자문사'라 한다)과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(적용범위)

법 제 18 조에 의거하여 자문사가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무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한하여 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다.

### 제 3 조(수수료의 종류)

본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투자자가 자문사에게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요청한 자산(이하 '자문계약자산'이라 한다)을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가를 의미하며,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#### ① 정률수수료

정의: 자문계약자산의 규모에 연동하여 특정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취하는 수수료로서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부과한다.

부과기준: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금융계좌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, 자문계약자산의 특성/규모/기간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한다. 자문사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상기 부과기준 외 부과기준을 둘 수 있으나, 정당한 사유 없이 차등을 두지 않는다.

절차

- 1) 부과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부과주기를 결정하여 투자자문계약서에 명시.
- 2) 부과주기에 따른 부과기간 동안 일간 발생한 자문수수료율을 다음 식  $\sum(\text{자문계약자산} \times \text{수수료율} \div 365 \text{ 일})$ 과 같이 계상하여 부과기간이 도래한 시점에 후취 징수.

#### ② 정액수수료

정의: 자문계약자산의 규모와 무관하되 자문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수취하는 수수료이다.

부과기준: 투자자 1 인에게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정해진 금액만을 수취한다.

절차

- 1) 투자자문계약기간을 결정하여 투자자문계약서에 명시.
- 2) 투자자문계약기간에 정액수수료를 곱한 금액을 선취 징수.

### ③ 성과보수

정의: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운용성과와 연계하여 부과한다.

부과기준: 투자자문계약에서 산정 및 징수방법을 미리 정해둔 성과보수만을 징수하며, 운용성과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계약자산의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다.

절차

- 1) 성과보수 발생하는 조건,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, 성과보수 발생조건 평가 시점과 방법, 성과보수율, 성과보수수취일자 및 납부방법을 결정하여 투자자문계약서에 명시.
- 2) 성과보수 발생조건 평가시점에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시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성과보수액을 산정.
- 3) 성과보수수취일자에 보수율에 상응하는 성과보수를 징수.

## 제 4 조(설명의무)

자문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## 제 5 조(공시)

자문사는 본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